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신청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
	사업장 소재지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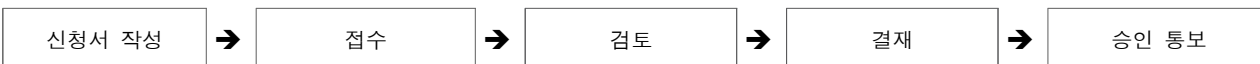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.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국가보훈부장관